

V. 독일

1. 재정추이

□ (재정적자) 2008년 이전까지 재정수지 흑지 또는 균형재정을 유지하였으나,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(2차에 걸친 추경예산)에 따라 2010년까지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, 2010년 말 경기부양책 종료 및 경제성장세 회복의 영향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

<표 V-1>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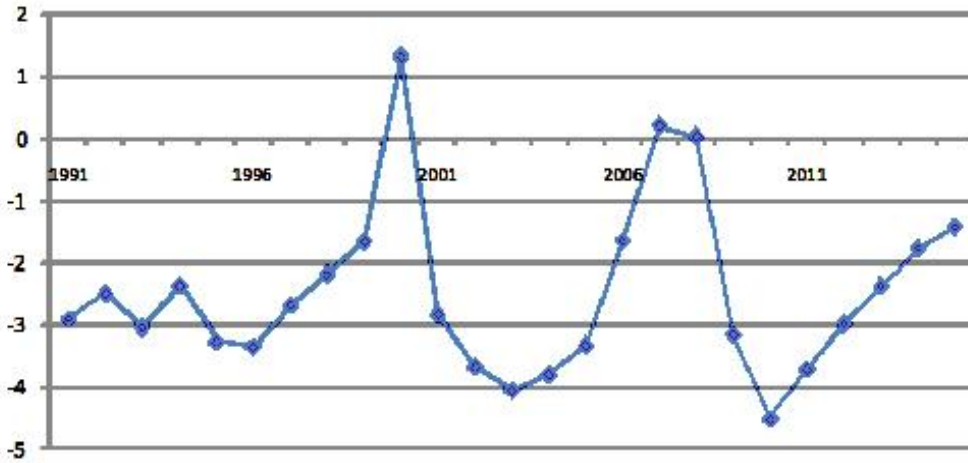
(단위: GDP 대비 %)

	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IFO		-	0.1	-3.0	-3.5	-2.3	-
KIEL		-	0.0	-3.0	-3.3	-2.9	-2.4
EU 집행위원회		-	0.1	-3.0	-3.7	-2.7	-1.8
IMF	2009. 11	-0.5	-	-4.2	-4.6	-	-
	2010. 5	0.2	0.0	-3.3	-5.7	-5.1	-
	2010. 11	0.2	0.0	-3.1	-4.5	-3.7	-3.0
	2011. 1	-	0.0	-3.0	-3.5	-2.6	-2.3

자료: IFO: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
 KIEL: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
 EU 집행위원회: Economic Forecast, 2010. 11
 IMF, Fiscal Monitor, 2009년 11월 ~ 2011년 1월

[그림 V-1]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추이(전망치 포함)

(단위: GDP 대비 %)



자료: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, 2010년 10월

□ (부채) 2008년까지 GDP 대비 60%대를 유지하던 부채규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70%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

○ IMF에 따르면, 최근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당분간 GDP 대비 70%대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

<표 V-2> 독일정부 총부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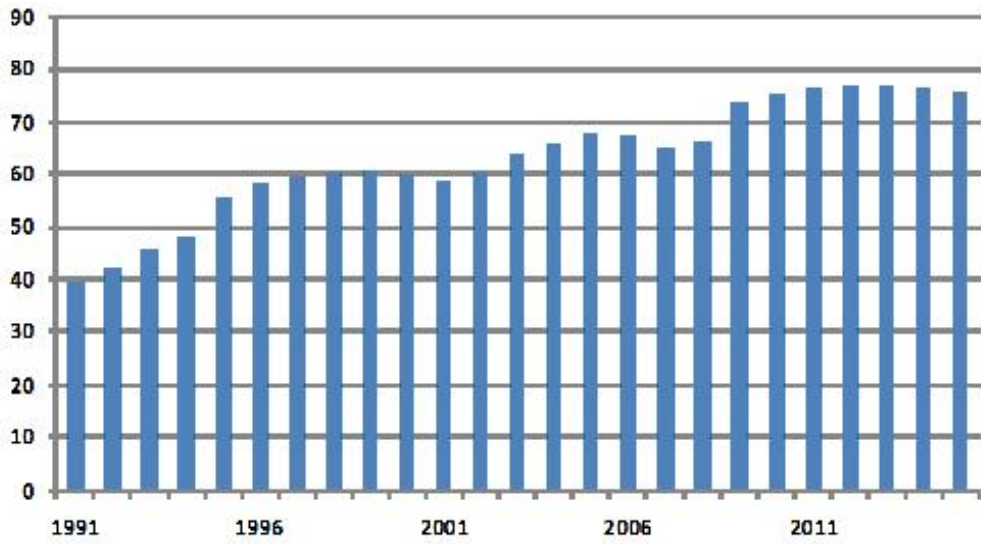
(단위: GDP 대비 %)

	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EU 집행위원회		64.9	66.3	73.4	75.7	75.9	75.2
IMF	2009.11	63.4	-	78.7	84.5	-	-
	2010.5	65.0	65.9	72.5	76.7	79.6	-
	2010.11	64.9	66.3	73.5	75.3	76.5	77.0
	2011.1	-	66.3	73.5	76.6	77.1	77.1

자료: IMF, Fiscal Monitor, 2009년 11월~2011년 1월
EU 집행위원회, European Economic Forecast, 2010년 10월

[그림 V-2] 독일정부 총부채 추이(전망치 포함)

(단위: GDP 대비 %)



자료: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, 2010년 10월

2. 재정건전화 방안

- (재정건전화 정책의 추진배경)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재정수지 악화 및 EU ‘안정성장협약(European Stability and Growth Pact: 이하 SGP)’ 기준 준수 의무, 기타 정치적 고려 등
 -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결과, 재정적자 및 부채규모 급증
 -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SGP상의 재정적자(GDP 대비 3%) 및 부채비율(GDP 대비 60%) 제한 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 발생
 -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대폭적인 긴축정책을 계획(2010. 5. 23 독일 재무장관 인터뷰)
 - 그 외 주변국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, 자국 내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통해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등

<표 V-3> 독일 및 OECD 국가들의 재정개선 필요

(단위: 잠재 GDP 대비 %)

국가	2010년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(A)	채무안정을 위한 적정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(B)	2025년까지 재정개선 필요 ¹⁾ (C=B-A, %p)	2010~2012년 예상변동분 (추정, D)	2012년 이후 재정개선 필요 (C-D, %p)
독일	-0.7	0.8	1.6	1.1	0.5
OECD전체	-4.1	1.3	5.3	2.2	3.2
유로지역	-1.4	1	2.5	2	0.5
한국	1	-3.3	-4.3	1.2	-5.5

주: 1) 재정개선 필요: 2025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개선폭 (장기 baseline 시나리오 및 완만한 속도의 재정건전화를 가정)

1. OECD 경제전망보고서(Economic outlook No. 88, 2010. 11. 18)는 2025년까지 국가채무 안정을 위해 독일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를 잠재 GDP 대비 1.6%p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

- (재정건전화 정책의 진행과정) SGP에 따라 2011년 이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재정안정화프로그램 수립(2009년 2월 13일) 및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 재정준칙을 마련하고, 그에 따른 2010~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2011년 긴축예산안 발표 및 확정

- SGP는 EU 회원국들이 명목목표(GDP 대비 재정적자 3%, GDP 대비 국가채무 60%) 및 중기재정목표(구조적 재정수지 -1%~흑자 유지) 달성 여부와 향후 달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
- 구조적 재정적자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5억유로씩 감소시켜 2016년에 GDP 대비 0.35% 이내로 달성할 계획이며, 2020년까지 신규부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추진

□ (재정의 지속가능성 메커니즘) 독일정부가 SGP 규정에 기초하여 마련한 헌법상 재정준칙의 핵심은 ‘채무제한규정(debt brake rule)’으로,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2010~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2011년 긴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화 달성 계획

- SGP 규정에 따르기 위해, 독일정부는 2011년 이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(2009년 2월 13일),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상 재정준칙 마련
- 개정된 헌법상 ‘채무제한규정(debt brake rule)’에는 정부의 구조적 부채규모를 낮추고 경기변동 등에 의한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, 중장기적인 공공부채 감축 및 지속가능한 재정의 메커니즘을 구축
 - 비경기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 차입규모는 GDP 대비 0.35%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, 경기적 요인에 의한 부분은 경기침체(호황)기에 따라 차입규모가 증가(감소 또는 흑자)할 수 있음
 - 금융거래(민영화)에 의한 조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
 - 예산상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, 통제계정(control account)을 통해 관리되며, 이 계정의 잔고는 GDP의 1.5%를 초과할 수 없고, 또한 GDP의 1%를 초과 시 경제상황을 고려한 감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
 - 재정정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 안정화 위원회가 설치되어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여, 위기수준이라 판단되는 경우 재건 프로그램(restructuring programme)을 실시

- 독일정부는 헌법상의 재정준칙(채무제한규정(debt brake rule))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0~2014년도 중기재정계획 및 2011년 긴축예산안 마련 및 각종 세제개편 실시
 - 은행세 도입 및 은행구조조정법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위험을 낮추고,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제안
 - 재정건전화 계획상 각종 신설된 세제와 2011년 예산상 복지지출 삭감 정책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

가. 재정건전화 방안: 세입 측면

1) 재정적자 감축 방안

- 독일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, 은행세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법, 적자 감축을 위한 중기 재정계획(2010~2014) 및 2011년도 긴축예산안 등에서의 항공세, 핵연료세 신설 등은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인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(각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2)항에서 기술)

2)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

- 독일정부는 새로운 은행세(bank levy)를 도입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위험 및 실물경제와 금융기관 간 상호의존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교훈으로 은행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
 - 향후 금융위기 발생 시 위험을 줄이고 금융부문의 책임성 강화 목적
 - 부과세율은 금융기관의 규모 및 다른 금융시장 참여자와의 상호관련성에 따라 연간 수익의 약 5~15%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, 연간 약 10억유로의 재정수입의 증대를 기대

- 확보된 수입은 연방금융시장안정화펀드(Federal Financial Market Stabilization: FSMA)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며, 위기시 부실 은행의 구제와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사용
- 정부는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은행세 입법을 추진할 방침

□ 독일정부, 금융기관 구조조정법안(bank-restructuring bill) 제출(2010. 7. 13)

-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형은행 또는 다른 시장 참여자와 연관성 높은 금융기관의 도산 시 금융시장 전체에 큰 충격이 촉발될 수 있음을 인식
 -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같은 기존의 법률상 감독 수단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, 또 정부구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비용 전가

-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, 독일정부는 다음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법 발표(2010. 7. 13)

-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2단계의 명확한 절차 정립
 - 1단계(Informal out-of-court restructuring): 문제상황이 극복 가능한 경우, 금융기관 규제 등 다양한 비공식적 법정 외 수단을 통한 정부의 조기 개입 가능
 - 2단계(reorganisation): 금융기관 도산 및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상황인 경우, 현행보다 더 신속하고, 법적인 보호가 제한되며,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되며, 채무자들의 권리 침해됨을 감안하여 이러한 절차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만 적용
- 감독 수단 강화: 위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BaFin(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: 연방금융감독기관)의 권한을 강화하여, 독일정부를 대신하여 위기 시 금융기관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 (예: 주요사업 매각 명령)

- 은행세(bank levy): 금융기관이 향후 위기발생 시 비용을 분담하게 하기 위한 은행세 도입 및 금융시장안정화펀드 마련
- 금융시장 안정화기관의 새로운 역할: 금융시장안정화펀드의 운용은 물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책임을 부과

□ 독일 내각은 글로벌 금융위기 조치로 정부가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 자산에 대한 출구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(2010년 6월), 2011년 2월 15일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

- 위원회의 역할은 법적 상황(특히 유럽위원회(EC)의 법적 지원조건), 국제금융시장의 발전, 독일 자본시장에의 영향 및 자본시장 안정성, 안정화정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, 출구전략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전문가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

□ 독일정부는 적자감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(2010~2014년) 및 2011년도 긴축예산안을 발표 (2010년 7월 7일)

- 중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준칙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였으며,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총 817억유로(2010년 GDP의 약 3.4%) 절감 계획
 - 총 절감액 중 세입증대는 약 35.1%인 287억유로에 해당
- 세입증대 측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, 원자력 발전 건설 시 핵연료세 부과, 항공세 및 금융거래세 신설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할 계획
 - 원전 가동시한 연장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전력회사들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, 2011년부터 핵발전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에 매년 23억유로씩 징수
 - 2011년부터 독일 국내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세를 부과, 이를 통해 약 매년 10억유로의 세원확보 예상
 - 에너지산업에 대한 세금감면조치 중단으로 인해 2011년 10억유로, 2012년 이후 매년 15억유로의 예산이 감축될 예정

- 이미 승인된 은행세에 더해 일종의 ‘토빈세’ 형태의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, 인터넷을 통한 주식거래나 파생상품 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 부과를 고려

□ 독일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 및 재정건전화계획(consolidation package)을 위해 수반되는 법률 제·개정안을 마련함(2010년 9월)

- 예산지원법(Haushaltsbegleitgesetz 2011)안은 신설될 항공세의 근거법률인 항공교통통제법 제정과 에너지세법 등 20개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포괄하고 있으며, 법안 통과시 2011년에 35억 6백만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확보됨
- 기타 핵연료세와 금융시장거래세, 그 밖에 행정상의 경비 절감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예상
- 각 법안이 예산에 미칠 영향은 아래 표와 같으며, 2011년 총 112억 6백만유로의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

<표 V-4> 재정건전화계획의 개요: 법률 제·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액 추이

(단위: 백만유로)

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예산지원법	3,506	5,390	5,680	4,810
항공교통통제법 제정	1,000	1,000	1,000	1,000
에너지세-전력법 개정	1,340	1,160	1,500	1,500
파산법 개정	191	215	215	215
양육수당 개정	605	605	595	575
기타	370	2,410	2,370	1,520
핵연료세	2,300	2,300	2,300	2,300
금융시장거래세	-	2,000	2,000	2,000
기타 행정경비 절감	5,400	8,900	13,600	17,400
총계	11,206	18,580	23,580	26,510

주: 연방정부만을 포함한 내역

자료: 독일 재무부, Übersicht Umsetzung Zukunftspaket (2010. 09.)

- 항공교통통제법의 제정으로, 2011년 1월 1일부터 국내 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과세하는 항공세(aviation tax) 신설
 - 2010년 9월 1일 이후 예약한 항공편에 적용되며, 최종 도착지를 기준으로 운항 구간(거리)별 차등과세 방식 채택
 - 2,500km 이내는 8유로, 2,500~6,000km는 25유로, 6,000km 이상인 경우 45유로를 부과
 - 2세 미만 유아와 육상 교통편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인 경우, 기타 외교, 국방, 의료 목적의 이용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
 - 간접세 방식으로 항공사에 부과할 예정이나, 소비자에 전가되어 항공권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

- 독일 내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감 및 재생을 목표로 핵연료 소비에 과세하는 핵연료세제를 채택
 -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확대, 전력망의 현대화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목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념을 승인하고,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핵연료세법(Kernbrennstoffsteuergesetz)안을 마련함
 -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, 기존 17개 원자로의 평균수명을 12년(2036년까지) 연장하기로 함
 - 독일정부가 원전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핵연료세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수입은 매년 23억유로로 예상

<표 V-5> 중기재정계획상 적자감축내역

(단위: 억유로)

연도		2011	2012	2013	2014	누계		(비중, %)	
감축액 총계		112	192	237	276	817		100.0	
세입 증대	감면축소	20	25	25	25	95	287	11.6	35.1
	환경세 등 신설	33	53	53	53	192		23.5	

자료: 독일 재무부

<표 V-6>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: 세입 측면

구분	주요 내용
감면 축소	- 에너지 관련 세제혜택 축소 (2011년 10억유로, 2012년 이후 매년 15억유로) - 항공여행 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 인상(매년 10억유로)
환경세 등 신설	- 원자력 발전 건설시 환경세 신설(매년 32억유로) - 금융거래세 신설(2012년 이후 매년 20억유로)

나. 재정건전화 방안: 세출 측면

1) 재정적자 감축 방안

- 세출 측면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, 헌법상 재정준칙 도입, 적자 감축을 위한 중기재정계획(2010~2014) 및 2011년도 건축예산안상의 복지지출(실업급여, 연금 등) 삭감, 공무원 및 군 인력 감축 등은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인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(각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2)항에서 기술)

2)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

-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헌법(독일기본법: Grundgesetz) 개정 및 헌법상 재정준칙 도입(2009년 6월)
 - (배경)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재정악화, 기존 준칙의 한계 및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헌법 개정 및 헌법상 재정준칙 마련
 - (진행과정) 독일 내각에서 2009년 3월 11일 헌법개정안 제출, 2009년 5월 29일 하원 통과, 2009년 6월 12일 상원 통과 및 확정, 2011년 발효
 - (주요내용)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, 주정부는 2020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며(재정수지 준칙),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을 고려한 공공재정 계획 수립 등

-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.35% 이하로 억제하고, 초과 시¹³⁾ 차액은 통제계정(control/equalization account)에서 보관해야 하며, 이 계정의 규모는 GDP 대비 1.5%를 상회할 수 없음
- 연방정부와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방정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연간 8억 유로의 보조금 지급
- 독일정부는 재정준칙을 안정화프로그램(Stability Programme) 및 2011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여 지출감축 중심의 긴축예산안을 발표

※ 독일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독일은 재정건전화 및 연방·주·지방정부의 재정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독일 헌법인 기본법(Basic Law-Grundgesetz)을 2009년 7월 개정
 - 제109조(연방 및 지방의 예산운용)의 추가내용 : “연방 및 지방정부의 예산은 차입을 통하지 아니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. 단, 경기침체 시 경제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및 주정부는 차입을 늘릴 수 있다. 또한 자연재해 및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차입을 늘릴 수 있다. 중기 균형재정의 달성을 위해 연방은 연간 차입규모를 GDP 대비 0.35%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.”
 - 제115조(차입)의 추가내용 : “실질차입 규모가 허용되는 차입규모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통제계정(control account 또는 equalization account)에서 관리될 것이며 이 계정의 잔고는 GDP의 1.5%를 넘을 수 없다. 이 계정의 잔액이 GDP의 1%를 넘을 경우에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.”
 - 제143d조 : “기본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신규규정은 2011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.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, 주정부는 2020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.”
 - 제109a조(안정화 위원회) : “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정화 위원회(Stability Council)가 설립되며, 이를 통해 연방 및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관리되고, 이들 정부의 재정상황은 매년 검토 및 보고되어야 하며 안정화 위원회의 결정사안은 문서화되어야 한다.”

13) 예외는 자연재해 및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국회 2/3의 동의를 얻은 경우

□ SGP 및 개정된 헌법에 따른 재정안정화위원회(Stability Council) 설치 및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(Stability Programme) 발표(2010년 2월 9일)

- (배경) SGP에서 EU 회원국들이 유럽 경제금융이사회(ECOFIN)에 매년 명목목표(GDP 대비 재정적자 3%, GDP 대비 국가채무 60%) 및 중기재정목표(구조적 재정수지 -1%~흑자 유지) 달성 여부와 향후 달성 계획(유로회원국: Stability Programme, 비유로회원국: Convergence Programme)을 제출하도록 규정
- SGP에 따라 개정된 헌법 제109a조에 근거하여, 재무부 장관, 경제기술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안정화 위원회(Stability Council)를 설치하여 향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발표 및 논의
- (주요내용) 2010년 당시 GDP 대비 5.1%인(일반정부) 재정수지 적자를 2013년까지 3%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, 헌법상 재정준칙 조항에 맞추어 2016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0.35%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대적인 긴축정책 계획
 - 2016년까지 매년 100억유로 이상 감축 예정
 - 세금인상과 지출감축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, 주정부 보조금 삭감, 수당 및 면세 폐지 등이 우선 시행 대상

□ 독일정부는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중기재정계획(2010~2014년) 및 2011년도 긴축예산안을 발표(2010년 7월 7일)

- 중기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정준칙 및 재정안정화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였으며,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총 817억유로(2010년 GDP의 약 3.4%) 절감 계획
 - 총 절감액 중 지출감축에 해당하는 액수는 64.9%인 531억유로
- 2011년 재정지출 규모는 2010년 3,195억유로에서 3,074억유로로 3.8% 축소
 - 정부는 2012년에는 재정지출을 3,010억유로까지 줄인 뒤 2014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계획
 -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1년 -3.8%에서 2012년 -2.1%, 2014년 -0.1%로 하향 안정화를 유지할 계획

- 2011년 예산안의 세출 감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,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감축이 4년간 총 303억유로(총적자감축 규모의 37.1%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 - 생활보호대상자(Hartz IV)에게 지불되던 연금이 삭감됨에 따라 매년 약 20억유로의 절감
 - 육아수당의 단계적 감축: 최대 14개월간 300유로가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폐지하고,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축소
 - 장기 실업수당 혜택 축소: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을 폐지하고, 실업자수당 I에서 II로 넘어가는 과도기 수당 폐지

<표 V-7> 중기재정계획(2010~2014)

(단위: 십억유로)

	2009	2010 (당초)	2010 (수정)	2011 예산안	Financial plan		
					2012	2013	2014
기존 재정지출 계획				326.0	329.4	332.0	(332.0)
재정지출	292.3	319.5	-	307.4	301.0	301.5	301.1
전년 대비 증가율(%)				-3.8%	-2.1%	+0.2%	-0.1%
2010~2014년 연간변동률					-1.5%		
조세수입	227.8	211.9	-	221.8	232.8	241.8	250.3
세외수입	30.2	27.4	-	28.1	28.1	28.1	26.7
신규차입	34.1	80.2	65.2	57.5	40.1	31.6	24.1
재정적자 (GDP 대비 %)		66.6 (2.8%)	53.2 (2.2%)	45.8 (1.9%)	39.0 (1.6%)	32.1 (1.3%)	25.1 (1.0%)

자료: 독일 재무부, 2010

-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기존에 추진중이던 사업을 중단 및 축소하고, 인력 감축 및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추진 예정
 - 5억 5천만유로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왕궁 복원사업 등 공공건설사업을 2014년으로 연기

- 공무원 1만 5천명 정원감축 및 2011년 연말보너스 동결
 - 공무원 정원 감축 및 월급 2.5% 인하를 통해 매년 40억유로 절감 예정
- 2014년까지 내무부를 비롯한 정부 각처의 불필요한 관직을 10,000~15,000개 축소할 계획
- 기타 국방 분야에서 9월 초까지 현 25만명의 연방군(Bundeswehr) 중 4만명을 축소할 예정이며 군복무 기간은 계획대로 6개월로 단축

<표 V-8> 중기재정계획상 적자감축내역

(단위: 억유로)

구분		2011	2012	2013	2014	누계		(비중, %)	
계		112	192	237	276	817		100.0	
지출 감축	복지	30	70	94	109	303	531	37.1	64.9
	일반 행정	23	33	39	39	134		16.4	
	기타(국방)	6	11	27	50	94		11.5	

자료: 독일 재무부, 2010

<표 V-9>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: 세출 측면

구분	주요 내용
지출감축	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업급여를 법정(의무)지출에서 연방노동국 재량지출로 전환 - 실업급여 수혜자 중 노령연금 이중수혜 일부 폐지¹⁾ - 노령연금 수혜자 중 월 1,240~1,800유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축소(소득대체율 67→65%)
	일반 행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비, 인건비 절감 및 인력 감축
	기타(국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0,000여 명의 군 인력 감축 - 이자비용 절감

주: 1) 독일의 실업보험은 보험료로 충당하는 사회보험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보조로 구성되며, 이 중 사회보조 수혜자의 노령연금 이중수혜 일부를 폐지

자료: 독일 재무부, 2010